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부모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Perceptions of Parents and Directors on Safety,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t Child-care Centers*

김혜금(Hye-Gum Kim)¹⁾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perceptions of parents and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 about safety, injury prevention, and range and level of compensation. Subjects were 285 parents and 297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 in Ky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Results showed differences between perceptions of parents and directors : parents considered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safety education to be more important; directors considered preparation for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equipment for injury prevention to be more important. Parents thought that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include travel to and from the child-care center; directors thought that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include sudden infant death.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directors regarding amount, subject, and process of compensation.

Key Words : 안전사고 예방(injury prevention and safety), 안전사고 보상 범위(range of compensation for injury), 안전사고 보상 수준(level of compensation for injury).

I. 서 론

우리나라 보육규모는 1990년 말에 보육시설 1,919개소, 보육아동 4만 8천명이던 것이 2008년 6월 말 현재로는 보육시설 32,140개소, 보육아동

1,091,287명이 되었다. 이는 보육시설 수 대비로 약 17배, 보육아동 수 대비로는 약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같은 양적 성장에 비례해서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육시설에서 안

* 본 연구는 2009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¹⁾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937 Jeong ja-dong, Jangan-gu, Suwon 440-714, Korea
E-mail : khghoonba@hanmail.net

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영유아 수는 2004년 3,003명, 2005년 3,161명, 2006년 3,716명, 2007년 5,808명 등이었으며, 영유아 사망건수는 2004년 8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 2007년 13명으로 한 해 평균 10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8. 10. 7).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2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실외놀이터와 보육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보건복지부, 2001; 여성가족부, 2006; 정인자·이재연, 1998). 또한 보육시설 안전사고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남혜경, 2002; 여성가족부, 2006), 실내영역에서는 교실에서의 사고가 많고 실외영역에서는 실외놀이터에서의 사고율이 가장 높다(보건복지부, 2001; 신동주, 2001; 하나미, 1999). 상해 사고의 원인으로는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많으며 남아의 사고가 여아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남혜경, 2002; 여성가족부, 2006;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영유아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아동 상해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김혜금, 2002). 그런데 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상한도가 너무 적어서 개별 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안전사고도 있다. 2005년 전국 보육시설의 아동 상해보험 가입율은 96%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민영보험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의 비율이 20% 정도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현재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상해 및 사망 사고 관련 민영보험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음식물에 의한 안전사고, 보육시설에서의 제 3자의 사고 등은 보상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의 갑작스런 돌연사는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육시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육시설에서 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은 11.9% 정도를 차지하며, 보상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망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의해 67% 정도가 보상이 되고 시설에서 30% 정도를 보상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보상 부담이 적지 않다(여성가족부, 2006).

반면, 유치원은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67호, 2007. 1. 26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여 등·하원시 사고 및 유치원 급식사고를 비롯하여 유치원 내·외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유치원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로 유아가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에는 유치원에서의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도 포함된다. 또한 유아 이외에 교사와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도 보상받을 수 있고 유치원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육안전공제회가 설립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장과 교사는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또한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영유아도 성장발달 과정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후유증과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당하기도 한다. 부모 또한 어린 자녀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

를 입을 뿐 아니라 자녀의 간병으로 인한 시간적 소비와 신체적 피로를 겪게 되고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마음 고생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부모, 영유아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시설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유아의 부주의로 인해 보육시설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2005년에는 전체 사고의 78.3%, 그리고 2004년에는 전체 사고의 78.6%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보육시설은 특히 사고 취약성을 지닌 다수의 영유아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사고의 여파는 영유아의 생명과 장애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은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그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와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무능력자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부모를 대신하여 일정 시간 동안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유아의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책임 범위는 영유아의 감독자

로서의 부모의 책임 범위 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학령기 이후의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비해 안전사고의 책임이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보육시설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육시설장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 또한 보육시설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걱정하고 상당수 부모들이 보육시설 안전사고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영남일보, 2005. 11. 15). 부모들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영아의 부모들은 보육시설에서의 안전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이미화 외, 2005) 보육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놀이 시설의 안전점검 및 계단, 바닥, 출입문 등의 시설설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서 영유아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바란다(보건복지부, 2001).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영유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이지만, 영유아의 사고를 모두 예방하지는 못하며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심각한 상해인 경우 보상 문제로 보육시설과 부모간 마찰을 빚게 되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김혜금, 2008). 안전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 영유아의 부모들은 공적인 치료비용 이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이재연, 1995),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육시설에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인해 많은 보육시설이 피해 영유아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다(보건복지부, 2001; 여성가족부, 2006).

현재 개별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아동상해보험은 안전사고 예방이나 보상기능에 한계

가 있고 보상처리로 인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모와 보육시설 모두 시간적, 정신적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 개별 보육시설에서 민영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대형사고의 경우 보육시설과 부모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보상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측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보육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메디칼투데이, 2008. 6. 5).

정부에서도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여성가족부는 학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제 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 주요 정책 과제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0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 사고예방 및 사후보상의 제도화를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영유아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지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보육안전공제회 설립만으로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육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발생시 부모와 보육시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사고 보상 실태와 부모의 보상 관련 요구를 조

사하여 현실성 있는 안전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정책은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중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예방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유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며 안전 관련 연구 또한 많지 않다. 현재까지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보육시설의 안전실태(신동주, 2001; 이수재·이진숙, 2006; 이순자, 2006; 이재연, 1995; 정인자·이재연, 1998; 홍혜경·지성애·김영옥, 1998; 하나미,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황옥경, 2004), 안전교육의 실태(성은현·윤선화·정윤경, 2002; 장영희·정미라·배소연, 1997), 안전교육의 효과(김영옥·홍혜경·지성애, 1999), 보육시설 사고 특성(남혜경, 2002), 안전사고 예방(박희숙, 2003; 보건복지부, 2001)을 주제로 행해졌고 그 외에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박영례·김경경·최미혜, 2006; 이은경·안효진, 2006; 홍명희·정영숙·장혜자, 2004)을 조사한 연구가 있을 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련한 연구는 여성가족부(2006)와 김혜금(2008)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정도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정도와 관련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부모와 시설간 인식의 차이는 보상처리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은 바늘과 실처럼 서로

연관되며 예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상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육시설은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예방적 노력이 미흡해서 사고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보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와 보육시설간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보상 처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공방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두 주체인 보육시설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안전사고 보상과 예방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보육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보육시설 안전사고 대비 적절성, 보육시설 안전교육의 적절성, 보육시설 시설·설비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와 보육시설장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등·하원시 사고 포함 여부, 음식물에 의한 사고 포함 여부, 보육시설에서의 제 3자의 상해사고 포함 여부, 영아돌연사 포함 여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와 보육시설장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보상 금액 적절성, 보상내용 적절성, 보상처리 과정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와 보육시설장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교사교육원 중 보육시설장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3개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곳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장 300명과 이들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육시설장은 보수교육 중간 휴식 시간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보육시설장 편으로 학부모용 질문지를 부탁하여 시설장 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3일 후 보육교사교육원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으며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시설장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전체 300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가 3부 있어서 이를 제외한 29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는 294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 9부를 제외한 28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모의 연령은 30-39세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27.7%, 20-29세 26.0%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23.2%였고 어머니는 76.8%를 차지했으며 학력은 대졸 48.8%, 고졸 34.0%, 대학원졸 9.1%로 대졸 이상이 57.9%였다. 자녀의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구 분		부모	구 분	보육시설장	
연령	20-29세	74(26.0)	연령	20-29세	9(3.0)
	30-39세	131(46.0)		30-39세	115(38.7)
	40-49세	79(27.7)		40-49세	154(51.9)
	50-59세	1(0.3)		50-59세	16(5.4)
	60세 이상	0(0.0)		60세 이상	3(1.0)
성별	남	66(23.2)	성별	남	4(1.3)
	여	219(76.8)		여	293(98.7)
학력	대학원졸	26(9.1)	학력	대학원졸	35(11.8)
	대졸	139(48.8)		대졸	166(55.9)
	고졸	97(34.0)		고졸	96(32.3)
	기타	23(8.1)		기타	0(0.0)
자녀 연령	만 2세 미만	54(19.0)	시설 유형	국공립·법인	12(4.1)
	만 2세	79(27.7)		민간	164(55.2)
	만 3-5세	152(53.3)		가정	121(40.7)
계		285(100.0)	계		297(100.0)

연령으로는 2세 미만이 19.0%, 만 2세가 27.7%, 만 3-5세가 53.3%였다. 한편 보육시설장의 연령은 40-48세가 51.9%, 30-39세 38.7%, 50-59세 5.4%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1.3%, 여성이 98.7%였으며 보육시설장의 학력은 대졸 55.9%, 대학원졸 11.8%로 대졸 이상이 67.7%였다. 보육시설의 유형은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이 4.1%, 민간 55.2%, 가정보육시설이 40.7%로 비지원시설이 다수였다.

2. 연구도구

여성가족부(2006)와 이종규(2004)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부모와 보육시설장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각 4문항)과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련한 문항(20문항)으로 되어 있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문항은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보상범위, 안전사고 보상수준의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정도를 5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별로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부모 및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별 점수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6-30점,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인식이 6-30점,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한 인식이 8-40점이고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안전사고 예방이 .88, 안전사고 보상범위가 .86, 안전사고 보상수준이 .89로 나타났고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88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1차로 작성된 설문지가 부모 및 시설장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표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구분	구체적 내용	문항수	Cronbach α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보육시설 안전사고 대비(보험가입, 구급약품의 비치, 비상연락망 구비)의 적절성	8	.88
	보육시설 안전교육(내용, 횟수)의 적절성		
	보육시설 시설·설비 안전관리의 적절성 (실내 놀잇감, 실외 놀이기구, 보육실·계단·바닥·출입문 등의 실내 안전)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	등하원시 사고 포함 여부	4	.86
	음식물에 의한 사고 포함 여부		
	보육시설에서의 제 3자의 상해사고 포함 여부 영아돌연사 포함 여부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	보상금액(상해시 보상비용, 사망시 보상비용)의 적절성	8	.89
	보상내용(상해치료비, 성형수술비, 사망시 위로금, 통원비)의 적절성		
	보상처리 과정(보상처리 기간, 보상처리에 대한 상담 및 피드백)의 적절성		
전체		20	.88

위하여 먼저 유아교육 전공자와 아동학 전공자 강사 2명에게 문항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시설장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1곳의 부모 10명과 시설장 10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9일에서 7월 14일까지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나누어 주었다. 부모와 시설장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본 조사

보육시설장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10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고 297부(99%)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리고 설문지에 응답한 시설장들에게 부모 대상 설문지 300부를 배부해 줄 것을 부탁하여 부모용 설문지를 3일 후 회수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285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별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모와 시설

<표 3>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차이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부모	시설장	t
	M(SD)	M(SD)	
보육시설 안전사고 대비 적절성	7.14(6.54)	7.92(6.06)	2.279*
보육시설 안전교육의 적절성	8.92(6.54)	7.82(6.06)	4.791***
보육시설 시설·설비 안전관리의 적절성	6.40(6.79)	8.82(6.06)	2.495*
총합	22.66(13.53)	24.24(14.52)	.155

* $p<.05$ *** $p<.001$

장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총합은 부모가 평균 22.66점, 시설장이 평균 24.24점으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부모가 평균 75.53점, 시설장이 평균 80.80점으로 시설장의 인식 수준이 다소 높았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 대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의 인식이 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2.279$, $p<.05$), 보육시설 안전교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시설장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4.791$, $p<.001$).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모들보다 시설장들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t=2.495$,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시설장들보다 보육시설 안전교육이 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장들은 부모들보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대비와 보육시설 시설·설비의 안전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총합은 부모가 평균 29.34점, 시설장이 평균 30.25점으로 통계적

<표 4>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의 차이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	부모	시설장	t
	M(SD)	M(SD)	
등·하원시 사고 포함 여부	8.44(2.95)	7.94(2.50)	2.392**
음식물에 의한 사고 포함 여부	6.53(3.44)	7.84(3.71)	1.639
제 3자의 상해사고 포함 여부	6.69(2.79)	6.99(2.92)	1.021
영아돌연사 포함 여부	7.16(5.62)	8.36(4.78)	2.831**
총합	29.34(8.53)	30.25(12.33)	.604

** $p<.01$

<표 5>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차이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	부모	시설장	t
	M(SD)	M(SD)	
안전사고 보상금액 적절성	8.23(2.50)	9.11(2.95)	3.142**
안전사고 보상내용 적절성	7.43(2.67)	9.83(3.15)	2.742*
안전사고 보상처리 과정 적절성	7.72(5.18)	10.73(2.44)	2.479**
총합	15.21(6.27)	22.89(4.18)	4.385**

* $p < .05$ ** $p < .01$

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부모는 평균 73.85점이고 시설장은 평균 75.63점으로 시설장의 인식 수준이 다소 높았다.

안전사고 보범범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등·하원시 사고 포함 여부($F=2.392, p < .01$)에 있어서 시설장들보다 부모들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아돌연사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시설장들의 인식이 부모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831, p < .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시설장들보다 등·하원시 사고를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시설장들은 부모들보다 영아돌연사를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더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 총합은 부모가 평균 15.21점, 시설장이 평균 22.89점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부모는 평균 50.70점, 시설장은 평균 76.30점으로 부모들이 안전사고 보상수준이 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보상수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전사고 보상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F=3.142, p < .01$)에 있어서 시설장보다 부모들의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 보상내용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시설장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F=2.742, p < .05$). 그리고 안전사고 보상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시설장의 인식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F=2.479, p < .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들이 시설장들보다 현재의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금액, 보상내용, 보상처리 과정에 대해 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보상범위,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있어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부모들은 보육시설 안전교육이 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

다고 인식하는 반면 시설장들은 안전사고 대비와 시설·설비 안전관리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육시설에서 교통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이 78.6%, 모의소방훈련이 71.2%, 기타교육이 63.9%였고 과반수 정도의 시설에서 연 1-2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한 서문희, 신나리, 김문정(2006)의 연구 결과는 시설장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교육이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안전예방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이 보다 심도있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장들은 부모에 비해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대비와 시설·설비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살펴본 여성가족부(2006), 이미화 외(2005),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평가인증 신청시에도 대다수의 보육시설들이 안전영역이 잘 되어 있다고 자체평가에 보고하지만 현장관찰자의 의견은 안전영역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설장들이 보육시설 안전관리나 예방노력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시설장과 교사들이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미화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출입문 안전장치, 복도 바닥 미끄럼방지, 계단의 높이 및 너비 적합, 창문 안전망,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화장실 출입문 안전 및 위험물

관리, 콘센트 안전커버, 소화기 설치, 비상벨, 가스지붕 및 보관함, 응급전화번호 부착, 구급약품 구비, 놀이기구 파손 등의 13개 안전관리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여성가족부(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보육시설 안전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보육시설의 6.9%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예방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시설장들보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예방노력을 낮게 인식하였다는 점은 부모들이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육시설의 안전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가 허술한 경우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육시설에서 전적으로 지게 되므로 보육시설장은 부모의 의견 및 외부 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시설설비를 갖추어 유아의 연령, 신체 크기,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및 설비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보육시설장들보다 등·하원 시 사고를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시설장들은 부모들보다 영아돌연사를 안전사고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상범위에 있어서 부모와 보육시설장간 인식의 차이는 다른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접하는 바가 많은 보육시설장들과

달리 부모들은 해당 사고가 자녀에게 발생하거나 혹은 주변의 친한 사람의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사고만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보인다. 보육시설장은 다른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긴장하는데 특히 영아돌연사는 보육시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유형으로 보육시설장들이 평소 매우 염려하는 사고이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영아이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만 영아돌연사를 인식하기 때문에 보상범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등·하원시 사고는 매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사고로 부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하는데, 등·하원 사고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상 제외 사고 중의 하나가 등·하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나타난 여성가족부(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하교시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에 포함하고 있는 바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에서도 등·하원시 안전사고를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장들은 영아돌연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영아돌연사는 민영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육시설내에서 영아돌연사가 발생할 경우 보육시설장이 책임져야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보육시설의 96% 정도가 상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을 통한 보상이 2004년 84.8%, 2005년 80% 정도로 전체 안전사고의 대략 16-20%가 상해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

하고 특히 영아돌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여성가족부(2006)의 연구결과는 보육시설장들이 영아돌연사를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암, 아동학대, AIDS, 폐렴, 심장병, 낭포성 섬유증, 근위축증 등을 모두 합한 1년 이내의 영아 사망률보다 영아돌연사로 인해 사망률이 더 높고 매년 7,000명의 1세 이하의 영아가 인종, 종교,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orman, 1993). 우리나라에서는 영아돌연사로 사망하는 영아의 수가 통계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영아돌연사는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현재의 보험 보상제도하에서는 영아돌연사가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보상범위에 영아돌연사를 포함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추거나, 보육시설 내 간호사를 지원하거나, 영아들의 낮잠 시간에 10분마다 영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영아보육을 보육시설에서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수준에 대해 부모들이 보육시설장들보다 현재의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금액, 보상내용, 보상처리 과정에 대해 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해보험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서 시설과 부모간 마찰이 생기고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06; 이재연, 1995). 안전사고시 보험에 의해 처리하는 보육시설은 75.6%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보험 처리와 합

게 원장과 교사가 보상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8.3%, 보육시설장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7.1%, 시설장 및 교사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12%나 되었다(김혜금, 2002).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성형수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상해 발생 후 6개월 이내로 보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보상비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치료비용에 훨씬 못 미치고 통원비 또한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 수준이 적절하지 않고 보상처리 기간도 길어서 피해 영유아의 부모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이후에 보상을 받거나, 보상처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상해보험은 영유아의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가입은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부모이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보육시설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체계이다. 부모가 만족할만한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영유아와 학부모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처리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부모가 보상처리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어 부모와 보육시설은 경제적·시간적 소모전을 벌이게 되고 소송 과정에서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지며 피해를 입은 영유아 역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김혜금, 2008).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개별 보육시설에서 가입한 사보험에 의해 보상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등의 보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중요한 국가 책무 중의 하나이며, 3만여개의 보육시설에서 백 만명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는 현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민영보험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상체계가 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혜금, 2007). 공보험을 통해 민영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하원사고와 영아돌연사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수준, 보상처리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부모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부모와 시설장을 포함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 인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와 시설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처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기 때문

에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동시에 부모나 시설장들이 자신의 의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할 수 있기에 실제 부모와 시설장의 인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노력과 보상처리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와 시설장의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보상처리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부모와 시설장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력의 중요성과 보상수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안전사고 발생시 보육시설과 부모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영옥 · 홍혜경 · 지성애(1999). 농어촌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7, 115-143.

김혜금(2002). 보육시설에서의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293-309.

김혜금(2007).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대안 모색. *보육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 25-32.

김혜금(2008). 보육시설 안전실태와 배상책임 법적근거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논총*, 17(2), 109-126.

남혜경(2002). 보육시설의 사고 특성과 관련요인 분석.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4, 223-243.

메디칼투데이(2008. 6. 5). 아이 사망시 부모도, 어린

이집도 만신창이.

박영례 · 김경희 · 최미혜(2006).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아동간호학회지*, 12(4), 478-485.

박희숙(200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보건복지부(2001).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서문희 · 신나리 · 김문정(2006). 지역사회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지원 시범사업. *육아정책개발센터*.

성은현 · 윤선화 · 정윤경(2002).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1, 25-48.

신동주(200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놀이시설물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5, 223-241.

양진희(2005). 상황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6), 367-383.

여성가족부(2006).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영남일보(2005. 11. 15). 보육시설 이용 부모 65% 안전사고 걱정.

윤선화(2005).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42-110.

이미화 · 장혜경 · 김경미 · 황정임 · 김영란 · 김혜금 · 나중혜 · 문혁준 · 박금희 · 박용임 · 이숙 · 이완정 · 류임량 · 이수현(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2 :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이수재 · 이진숙(2006).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 1-15.

이순자(2006).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에 관한 실태 연구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연구*, 9, 55-70.

이영환 · 임옥희, 원은실(2004). 유아교사의 안전인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한국가정과학회지*, 7(3), 59-71.

- 이은경·안효진(2006). 유아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사고예방실천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5-22.
- 이재연(1995).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영유아보육학*, 2, 39-57.
- 이종규(2004). 한국과 일본의 학생안전사고관리 및 보상제도 비교. *한국보험학회지*, 68, 39-72.
- 장영희·정미라·배소연(1997).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유아교육연구*, 17(1), 23-44.
- 정인자·이재연(1998).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보육 환경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4, 329-351.
- 중앙일보(2008. 10. 7). 보육시설 안전사고 매년 증가...연평균 10명 사망.
- 하나미(1999).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 홍명희·정영숙·장혜자(2004).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 및 부모의 인식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41-749.
- 홍혜경·지성애·김영옥(1998).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3, 315-340.
- 황옥경(2004).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교수논집*, 16, 543-561.
- Gorman, C. (1993). Safer sleep. *Time Magazine*, 50.
-

2009년 2월 28일 투고, 2009년 7월 3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